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정기감사 결과보고

《 감사개요 》

○ 감사기간 : 2019. 11. 11.(월) ~ 11. 13.(수)(3일간)

○ 감 사 반 : 4명(감사팀장외 3명)

○ 감사범위 : 2017. 3월 이후 재단운영 전반

○ 중점감사내용

- 세출, 물품관리, 각종 공사 적법처리 여부

- 재단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

■ 지적사항

(단위 : 건, 천원)

일련번호	소 관	제 목	행정상 조치				재정상 조치			
			계	시정	주의	기타	계	지급	회수	부과
계		8건	8	5	3	-	1,474	0	1,474	0
1		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확인 소홀	1	1	-	-	925	-	925	-
2		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	1	1	-	-	150	-	150	-
3		강사료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 이행	1	1	-	-	-	-	-	-
4		시설사용료 등 세입처리 부적정	1	1	-	-	-	-	-	-
5		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	1	1	-	-	399	-	399	-
6		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계약업무 부적정	1	-	1	-	-	-	-	-
7		선금 지급 부적정	1	-	1	-	-	-	-	-
8		직인 폐지절차 소홀	1	-	1	-	-	-	-	-

□ 주요지적사례

▣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

○ 「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4조제1항 <별표 1>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의하면 각종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, 도급계약, 용역계약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공급 가액의 2.5%, 물품구매, 수리·제조 계약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 공급가액의 1.5%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.

○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에서는 연간 용역 계약건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미 매입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다.

▣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

○ 「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」에 따르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「지방자지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및 「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비 집행규칙 해설」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로 연말, 설, 추석 등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집행할 수 있다.

- 아울러 동일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·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 할 수 없으며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축의·부의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합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 할 수는 없다.

- 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하며 기관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.

○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5만원 초과 및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집행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기관장의 활동경비로 집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.

▣ 강사료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 이행

○ 소득세법」 제127조에서 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의 구분(사업소득, 기타소득 등)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그 징수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 13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- 아울러「기타소득 원천징수 해설-국세청 발간」에 따르면 원천징수 시기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「소득세법」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매달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 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고 과제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.

○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에서는 2019년 강사료를 집행함에 있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여부를 판단해 관련 규정에 맞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에도 이를 징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다.

▣ 시설사용료 등 세입처리 부적정

○「재단법인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시설이용 및 관리규정」 제4조(사용허가) 및 제7조(시설사용료 등 징수)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(단체)는 사용료 징수기준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○ 「재단법인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회계규정」 제24조(수입결정), 제27조(납입고지서), 제28조(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) 및 31조(수입보고서)에 따르면 모든 세입은 수입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입결의서(별지 제11호 서식)를 작성하여 징수관의 결재를 득한 후 납입고지서 등을 사용하여 재단에서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, 수입부(별지 제12호 서식)에 각각의 세입과목별로 기재하여야 한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다.

○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에서는 시설사용료 등 현금 수입금을 수입금 통장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지출금 통장계좌로 이체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세입처리 하였으며, 세목별 수입부(수입금출납원 확인필) 등을 작성하지 않아 총 수입금을 알 수 없는 등 수입금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▣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

○ 「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」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인센티브(포인트, 마일리지, 적립금 등)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기관에 년(年)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.

○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를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처리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▣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계약업무 부적정

○ 「재단법인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회계규정」 제76조(관계법규)에 의하면 입찰방법 및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감독)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.

- 아울러 「재단법인 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 사무관리규정」제33조(문서의 접수)에 따라 대외 접수문서는 등록대장에 접수내역을 기재하고, 문서의 내용에 따라 결재선과 결재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○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에서는 공정예정표와 품의서, 계약문서 상 공사기간이 서로 상의하였으며 착공·준공신고서를 접수하면서 등록대장에 접수하지 않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.

▣ 선금 지급 부적정

○ 「재단법인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회계규정」 제76조(관계법규)에 의하면 입찰방법 및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-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6장 선금·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조 제3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,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.

○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았고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잔여 이행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선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.

▣ 직인 폐지절차 소홀

○ 「재단법인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직인관리규정」제5조(직인의 신조, 개각 또는 폐지) 제2항에 의하면 재단의 폐지 등으로 직인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관리자는 [별지 제3호 서식]의 직인폐기대장에 정리하고 직인을 소각 처분하여야 하며, 같은 규정 제7조(공고)에 따라 직인을 신조·개각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○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에서는 직인을 폐기함에 있어 이를 공고하여야 함에도 공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.